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20년 영덕군 지방재정 공시



목 차

I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4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4
2. 재정공시 운용방법	4
II . 예산기준 재정공시	5
1. 공통공시 총괄	6
2. 예산규모	7
3. 재정여건	10
4. 재정운용계획	15
III . 별지	27
1. 유사 자치단체	27
2. 관련법규	28

제1절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8조

2 재정공시 운용방법

- 공시범위
 - 예산공시 : 예산규모, 재정지표(자립도, 자주도), 재정운영계획 등
 - 결산공시
 - 공통공시 :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 * 세입결산, 세출결산, 재정여건, 채무 및 부채 등
 - 특수공시 : 지역 특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시기 : 예산공시(2월), 결산공시(8월), 수시공시는 수시로 실시
- 공시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언론, 이장회의 등

2020년 영덕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영 덕 군 수 (인)

-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87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4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88억원보다 1,484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3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9억원입니다.
- ◆ 우리 군(도)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1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47 %입니다.
- ◆ 우리 군(도)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4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도)의 재정은 동종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자립도는 다소 높은 편이나 재정자주도는 동종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편입니다. 향후 지방세수 증가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조정아(054-730-6035)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영덕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4,872	4,123	749	4,180	3,388	792
	세출예산 (기금포함)	4,872	4,123	749	4,180	3,388	792
	지역통합 재정통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79	7.59	△1.20	7.9	7.33	△0.57
	재정자주도	58.1	58.6	△0.50	61.09	60.57	0.52
	통합재정수지	34	27	8	16	20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 개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2	2	△0	4	3	1
	행사·축제 경비 편성현황	48	53	△4	49	40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0
		시책추진	2	2	0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1	1	0
	지방보조금	101	111	△10	110	113	△3
	1인당 기준 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다)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경북 영덕군, 청도군, 의령군, 경남 남해군, 산청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덕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7,248	419,955	17,681	46,774	2,8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7,084	371,925	409,639	412,324	487,24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연평균 0.06% 증가율을 보이며 지난해 대비 하여 지방세8,257백만원, 보조금44,02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총76,932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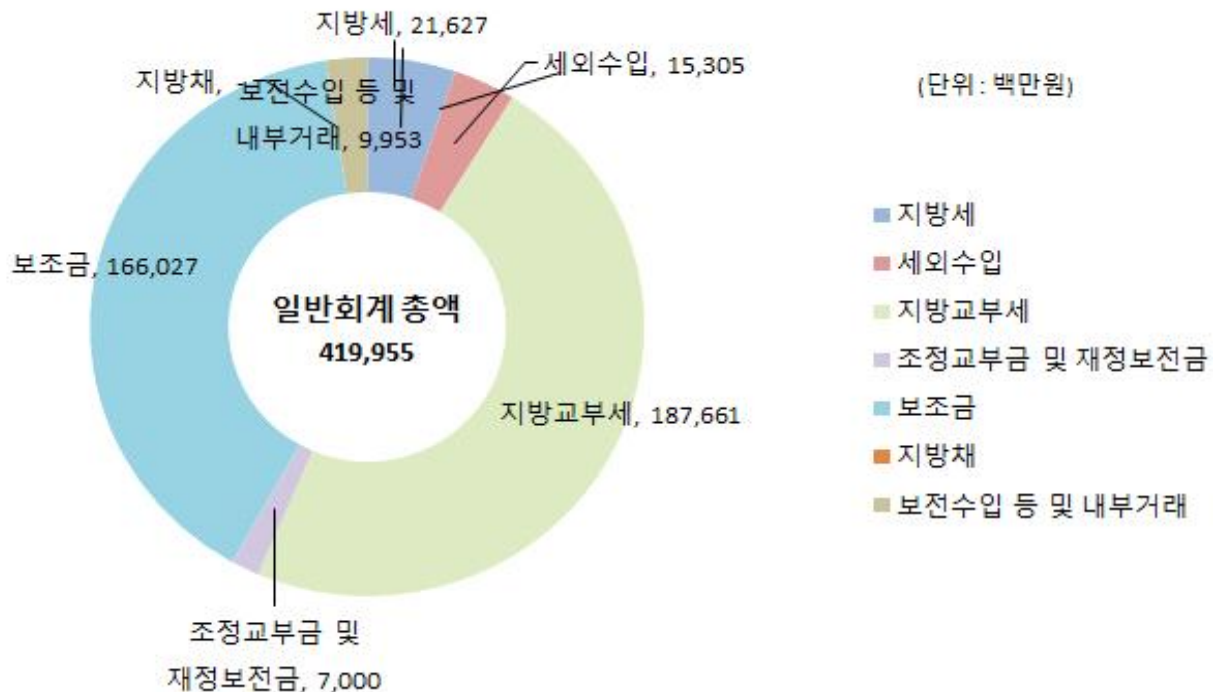
❖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8,251	100%	296,889	100%	337,330	100%	343,023	100%	419,955	100%
지 방 세	11,112	3.73%	12,040	4.06%	12,798	3.79%	13,370	3.90%	21,627	5.15%
세외수입	15,193	5.09%	12,958	4.36%	11,894	3.53%	12,651	3.69%	15,305	3.64%
지방교부세	136,500	45.77%	136,500	45.98%	163,940	48.60%	168,000	48.98%	200,042	47.63%
조정교부금 등	4,500	1.51%	6,500	2.19%	6,500	1.93%	7,000	2.04%	7,000	1.67%
보 조 금	116,945	39.21%	114,891	38.70%	122,014	36.17%	122,006	35.57%	166,027	39.53%
지 방 채	0	0.00%	0	0.00%	6,300	1.87%	0	0.0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00	4.69%	14,000	4.72%	13,884	4.12%	19,995	5.83%	9,953	2.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 1년 동안 영덕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영덕군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87,248	419,955	17,681	46,774	2,8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67,084	371,925	409,639	412,324	487,24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영덕군의 주요산업인 농·어업분야관련 예산인 농림해양수산 부문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보육과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 증가로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농림해양수산부분 및 일반 공공 행정부분의 세출이 크게 증가하여 총76,932백만원(연평균 증가율0.07%)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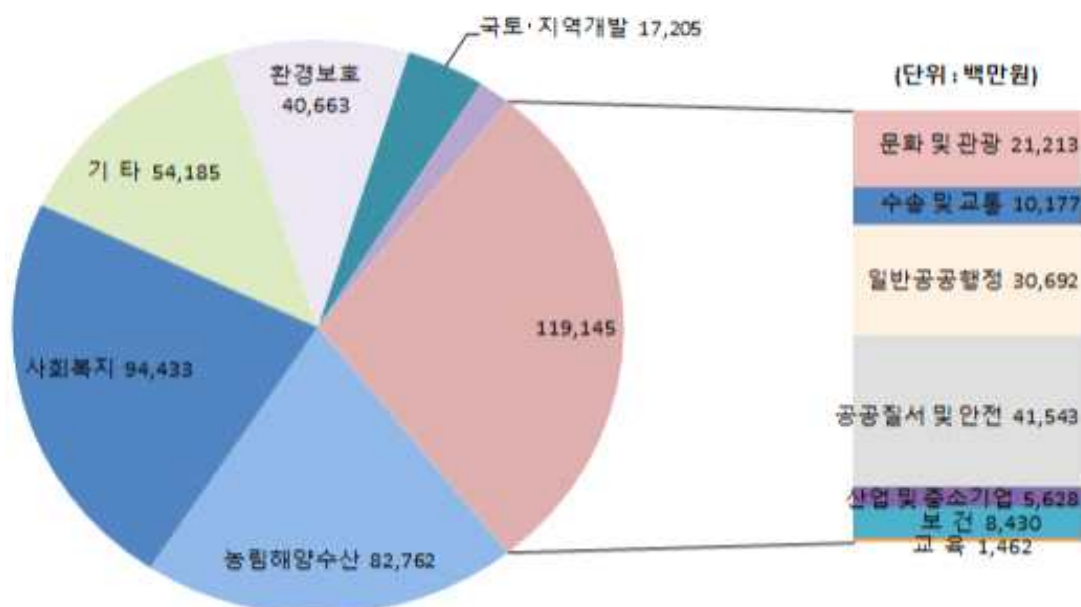
❖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8,251	100%	296,889	100%	337,330	100%	343,023	100%	419,955	100%
일반공공행정	13,725	4.60%	13,022	4.39%	24,669	7.31%	18,625	5.43%	30,692	7.31%
공공질서 및 안전	16,214	5.44%	8,916	3.00%	15,761	4.67%	17,047	4.97%	41,543	9.89%
교 육	1,334	0.45%	1,469	0.49%	1,294	0.38%	1,216	0.35%	1,231	0.29%
문화 및 관광	36,568	12.26%	26,363	8.88%	29,383	8.71%	25,155	7.33%	21,213	5.05%
환경 보호	17,565	5.89%	28,866	9.72%	29,498	8.74%	27,376	7.98%	40,663	9.68%
사 회 복 지	65,260	21.88%	63,972	21.55%	74,259	22.01%	82,755	24.13%	94,433	22.49%
보 건	4,801	1.61%	10,597	3.57%	7,659	2.27%	8,020	2.34%	9,537	2.27%
농림 해양수산	63,041	21.14%	61,390	20.68%	59,879	17.75%	64,046	18.67%	82,762	19.71%
산업·중소기업	4,041	1.35%	2,333	0.79%	5,186	1.54%	9,346	2.72%	9,242	2.20%
수송 및 교통	6,491	2.18%	7,895	2.66%	16,399	4.86%	12,644	3.69%	10,177	2.42%
국토 및 지역개발	19,868	6.66%	16,930	5.70%	19,102	5.66%	16,094	4.69%	17,205	4.10%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4,161	1.40%	8,798	2.96%	5,828	1.73%	9,644	2.81%	7,072	1.68%
기 타	45,182	15.15%	46,339	15.61%	48,413	14.35%	51,056	14.88%	54,185	12.90%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영덕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413,713	488,544	74,831	18.09
영덕군	412,324	487,248	74,925	18.17
출자·출연기관	1,390	1,296	△94	△6.7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1개) :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d.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영덕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49 (11.16)	419,955 (419,955)	36,933 (46,886)	373,069 (373,069)	0	9,953 (0)

- ▶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8.82 (13.51)	8.42 (13.14)	7.32 (11.44)	7.59 (13.42)	8.49 (11.1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단위 : %)



- ☞ 2016년부터 감소 추세이나 2020년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자립능력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전체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로 지방세수 증대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자립도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영덕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4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10 (60.47)	419,955 (419,955)	253,928 (243,975)	166,027 (166,027)	-	0 (9,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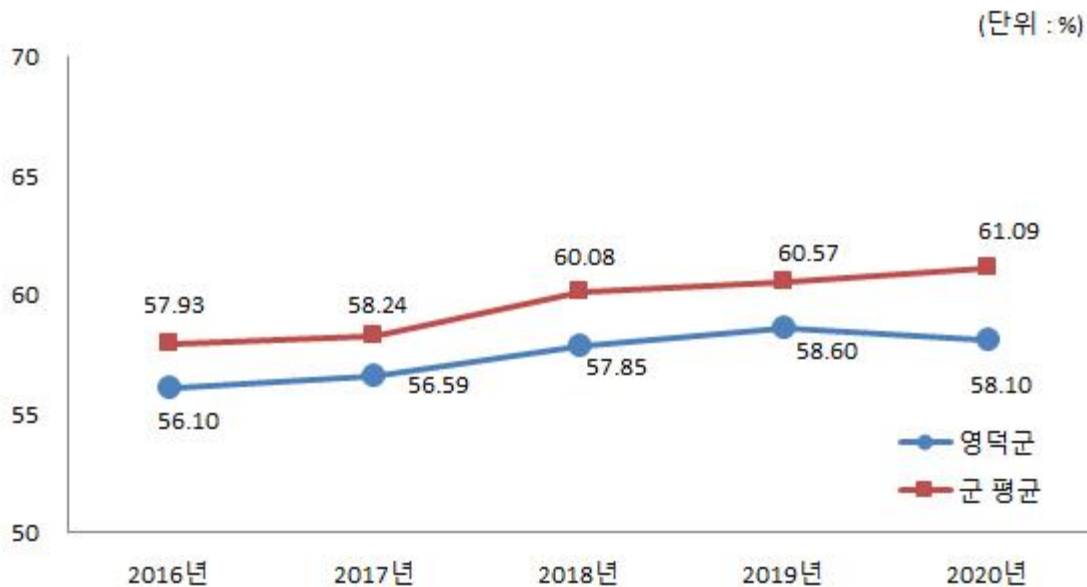
- ▶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6.10 (60.79)	56.59 (61.30)	57.85 (61.96)	58.60 (64.43)	58.10 (60.4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 재정자주도가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군은 주로 농·어업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어촌 군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 및 복지분야 보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영덕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2,002	471,546	30	280	250	53,240	471,796	△49,794	3,447
일반회계	410,002	406,768	0	0	0	9,953	406,768	3,234	13,187
기타 특별회계	3,027	46,494	30	280	250	42,987	46,744	△43,717	△730
공기업 특별회계	8,910	17,681	0	0	0	300	17,681	△8,771	△8,471
기 금	63	602	0	0	0	0	602	△539	△539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43,726	△56,871	△50,020	△60,416	△49,794
통합재정수지 2	356	91	6,408	2,672	3,447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가 실질적인 영덕군의 순수재정활동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2020년도 영덕군「통합재정수지2」는 2,672백만원 흑자를 기록해 재정운용상황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덕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41,580	543,439	544,944	546,123	547,257	2,723,343	0.30%
자 체 수 입	43,114	43,360	43,609	43,488	43,727	217,298	0.40%
이 전 수 입	366,037	367,239	368,084	374,967	375,951	1,852,278	0.70%
지 방 채	10,000	10,000	10,000	4,000	3,000	37,000	△26.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429	122,840	123,252	123,667	124,579	616,767	0.40%
세 출	541,580	543,439	544,944	546,123	547,257	2,723,343	0.30%
경 상 지 출	88,167	90,806	93,455	94,855	95,096	462,379	1.90%
사 업 수 요	453,414	452,633	451,490	451,267	452,161	2,260,965	△0.1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덕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6	12,98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1,16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9,63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2,179

- ▶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d.go.kr>)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 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영덕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20	820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d.go.kr>)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20	
주민주도형	문화관광과	형제바위알림판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문화관광과	달산옥계38경 기록 보존사업	50	"
주민주도형	안전재난건설과	옥산리 하수관로 및 도수로 복합구축	32	"
주민주도형	안전재난건설과	용덕리 재해위험하천정비사업	70	"
주민주도형	안전재난건설과	와구평 농로 확포장공사	143	"
주민주도형	안전재난건설과	중화리 노후교량 재건설 및 확장공사	500	"
주민주도형	농업기술센터	영덕 플리마켓 운영	2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d.go.kr>)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덕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72	184	152	466,729	392,029	74,700
본청	1	55	139	108	360,993	317,205	43,788
직속기관	0	8	25	27	56,630	41,013	15,616
의회 사무과	1	1	2	2	942	942	0
사업소	1	8	18	15	40,879	25,936	14,942
읍면	0	0	0	0	7,286	6,933	353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d.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79	58.1	22.49	27.28	56.64	113.33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d.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84,410	218	39	180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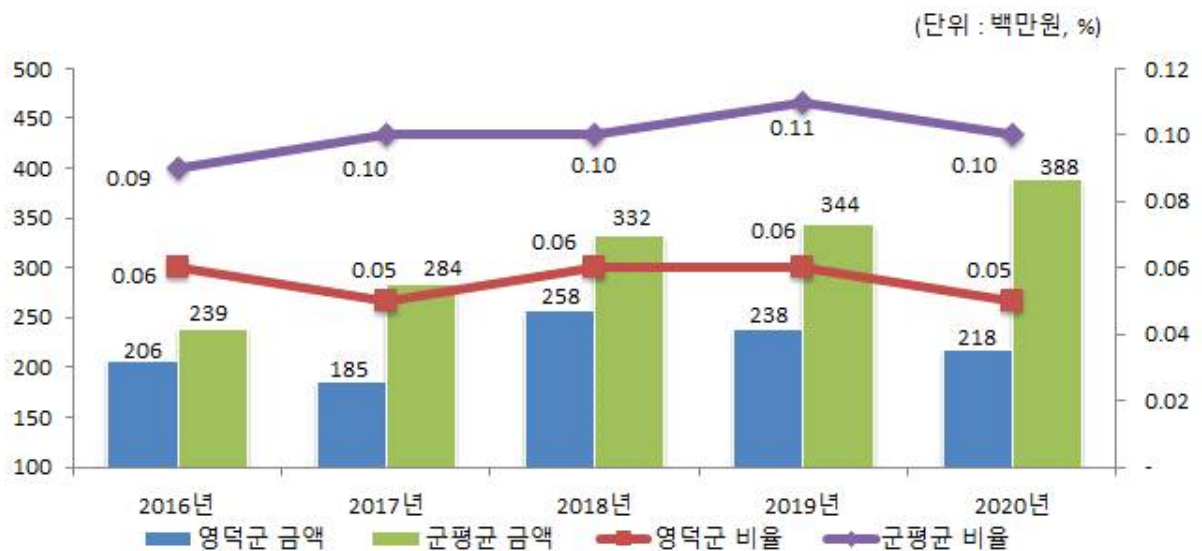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65,357	370,225	407,736	410,043	484,410
국외여비 총액 (B=C+D)	206	185	258	238	218
국외업무여비(C)	21	19	32	42	39
국제화여비(D)	185	166	226	196	180
비율	0.06%	0.05%	0.06%	0.06%	0.05%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영덕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9,955	4,849	1.1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98,251	296,889	337,330	343,023	419,955
행사·축제경비	3,469	3,729	4,647	5,296	4,849
비율	1.16%	1.26%	1.38%	1.54%	1.15%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덕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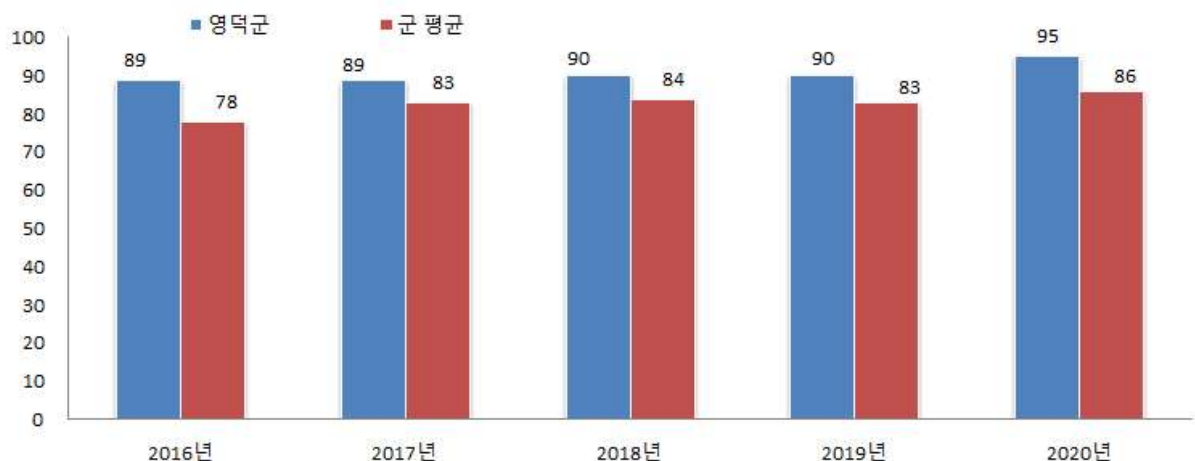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08	95	54	42	0.87

❖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90	90	9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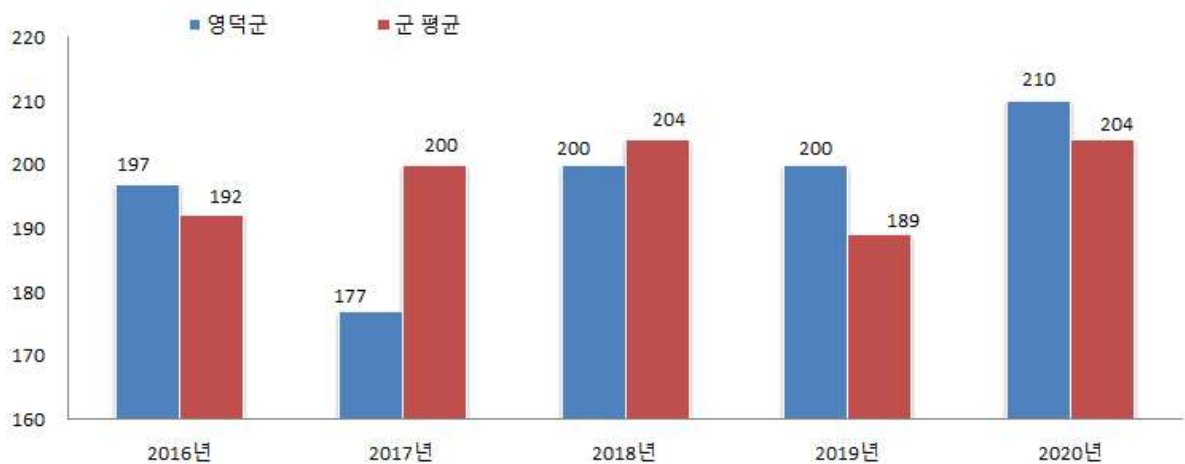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15	210	0.98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97	177	200	200	2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우리 영덕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5	149	63	47	20	1	1.03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00	82	114	132	149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우리 영덕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 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 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6,895	10,113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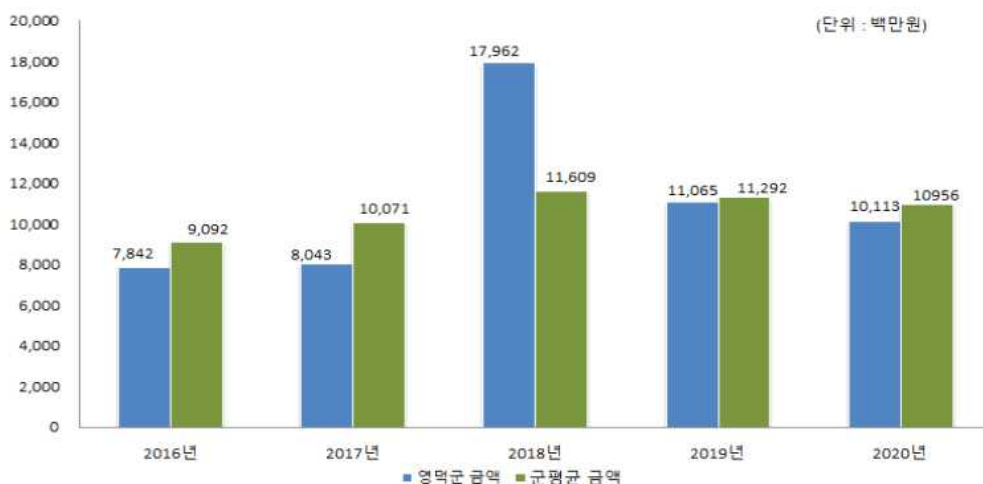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7,842	8,043	9,962	11,065	10,1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00	893	1
공무원 일·숙직비	1,443	72	0.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04	998	4

☞ 편성내역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116천원(인당) * 800명 = 892,8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 50,000원 * 3명 * 115일 = 17,250,000
 - 숙직비 50,000원 * 3명 * 366일 = 54,900,000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300,000 * 204명 * 12개월 = 734,400천원
 - 상여금 연 200% = 122,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20,000 * 24(월 2회) = 97,920천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 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965	1,585
인건비 절감	89	232
지방의회경비 절감	18	21
업무추진비 절감	87	5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68	△40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303	1,657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 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269	△182
지방세 징수율 제고	△36	△180
지방세 체납액 축소	△530	△586
경상세외수입 확충	359	1,23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2	△612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40

-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9년에 우리 영덕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9년에 우리 영덕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1 유사 자치단체

유 형		자치단체명				
시	시-(가) 15개 단체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시-(나) 20개 단체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 전남 순천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시흥시 경기 하남시 전북 군산시 경북 구미시	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기 광명시 강원 원주시 전남 여주시 경남 진주시
	시-(다) 20개 단체	경기 군포시 경기 포천시 충남 당진시 경북 안동시	경기 이천시 경기 의왕시 전남 목포시 경북 문경시	경기 양주시 강원 강릉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경기 오산시 충북 제천시 전남 광양시 경남 거제시	경기 안성시 충남 서산시 경북 김천시 경남 양산시
	시-(라) 20개 단체	경기 구리시 강원 태백시 충남 논산시 경북 영주시	경기 여주시 강원 속초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영천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전북 정읍시 경북 상주시	경기 과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통영시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경남 밀양시
군	군-(가) 21개 단체	부산 기장군 강원 홍천군 충남 예산군 전남 화순군 경남 창녕군	대구 달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태안군 전남 해남군	울산 울주군 충북 진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경북 울진군	경기 가평군 충남 홍성군 전남 고흥군 경남 함안군
	군-(나)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충남 금산군 전남 영광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합천군	경기 연천군 충남 서천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강원 평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 경남 하동군	강원 정선군 전남 영암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충북 옥천군 전남 무안군 경북 성주군 경남 거창군
	군-(다) 20개 단체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라) 20개 단체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경북 청송군	강원 양구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양군	강원 고성군 전북 무주군 전남 구례군 경북 고령군	강원 양양군 전북 장수군 전남 진도군 경북 봉화군	충북 증평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u>시·도는 회계년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u>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u>회계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년도 시작 10일 전까지</u>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u>3일 이내</u>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u>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년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0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 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 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년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